



알기 쉬운, 농업경영체등록!

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

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

- 휴·폐경을 제외한 경작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농지
- 330㎡이상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경작 농지
- 330㎡이상 농지에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가축
-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곤충

※ 독립경영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별 경계설치



☑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

농작물 재배

경영형태	공 통	필 수
자 경	*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-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 등	*영농사실확인서 - 이·통장확인 *인삼경작확인서 - 인삼농협발급 *자경증명발급신청서 - 읍·면·동 발급
임 차	*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 [선택 1가지]	[선택 1가지] *임대차 계약서

가축 사육

구 분	종 병 서 류
가 축	자영 *영농사실확인서 수탁 *수탁계약서
시 설	자영 - 임차 *축사·농지 임대차계약서
곤 충	*곤충 사육신고 확인증

- *본인 명의 사료 구매영수증
- *가축 입식 증명서
- *가축 출하 내역서
- [선택 1가지]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.naqs.go.kr (업무소개 → 농업경영체등록에서 서식 출력 가능)

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장소, 방법, 시기 등

- ☑ 장소 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·사무소
- ☑ 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uni.agrix.go.kr)
- ☑ 시기 : 농작물 재배 및 가축·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





경영주와 영농을 함께하는 경영주의 농업인도 등록가능

✓ 가족종사자는

-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(예외있음)
-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(예외있음)
-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

※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✓ 고용농업인은 고용계약서(최근 3개월 이상) 및 급여지급 내역 제출

농업경영체 변경등록

✓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정보, 농지소재지·면적·재배품목·시설현황, 가축사육 시설 등 **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**

- 기한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✓ 농지 및 사육시설 추가 시 지번정보 및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

✓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

-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(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정보 말소)

✓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방문

콜센터 1644-8778 온라인 uni.agrix.go.kr

과태료 부과

✓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경우 농업경영체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

※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말소 처리

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[증명서] 발급

✓ 전국 읍·면·동 사무소(어디서나 민원 신청)

✓ 무인 민원발급기

✓ 정부24(www.gov.kr)

✓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


•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**1644-8778** •

